

자금세탁방지 정책

전북은행

이 자금세탁방지 정책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및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이하 "KoFIU")이 공포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이하 "AML/CFT") 규정 등 현행 법률을 반영하였다.

전북은행은, 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해외법인 등을 포함한 은행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절차와 통제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1. 자금세탁방지 법률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혹은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KoFIU에 보고해야 한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금융기관은 원화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영수 또는 지급)를 KoFIU에 보고해야 한다.
- 고객확인제도(CDD) : 금융기관은 금융 거래 혹은 서비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과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포함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내부 정책

전북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AML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고 그것들은 지침 혹은 매뉴얼로 문서화 되어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직원들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고객확인 (CDD)

신규계좌 개설 시, 1,000만원(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금액) 이상 일회성금융거래 시, 혹은 100만원(또는 미화 1천달러 이상 금액) 이상 전신송금 시, 혹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차별화 된 고객 확인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수행된다. 고위험 고객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의 성격 및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고객 확인과 검증으로부터 수집된 서류, 데이터 및 정보와 고객정보는 다음의 정기적인 검토와 그런 정보의 비교를 위해 관리된다.

비대면 고객의 경우,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접촉 검증, 성명, 영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정보, 거래목적, 거래자금 원천 및 실제소유자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4. 거래 모니터링

비정상적인 거래와 거래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 고객의 프로필 정보와 또래 집단(Peer group)의 프로필 정보 검토 및 비교
- 표준화 된 이전의 자금세탁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거래정보 검토 및 비교
- 고객 및 거래 정보로 자금세탁위험 측정 및 평가

-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패턴 분석
AML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고 내부절차에 따라 의심되는 것으로 확정된 비정상적인 거래는 KoFIU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TR)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혹은 테러자금조달이라고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KoFIU에 보고해야 한다.

6. 고액현금거래 보고 (CTR)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1,000만원 이상(영수 또는 지급) 현금거래를 KoFIU에 보고해야 한다.

7. 정치적 주요인물 (PEP)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또는 그 가족 및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해서는, 보통의 고객확인 및 다른 검증절차에 추가하여 그 가족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정치적 주요인물 파일은 은행 준법감시인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실사제도 (요주의 인물 확인)

- 금융위원회(FSC)가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아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및 은행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UN의 테러리스트와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OFAC의 제재리스트, EU의 제재리스트 등과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와 관련된 자와 거래관계를 수립을 위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자료 보관

고객 확인 및 검증, 금융거래 및 의심거래보고서 등을 포함한 모든 대내·외 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적어도 5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10. 교육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직원교육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일자, 참석자 및 내용과 같은 교육의 세부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의 직위 또는 직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특히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텔러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AML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만 한다.

11. 독립적인 감사

AML에 대한 감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부부서 : 연 1회
 - 지점 : 정기적인 현장 감사, 비정기적인 서면 또는 모니터링 감사
-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감사의 범위, 절차, 위반내용 및 지시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12. 신상품 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부서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 동 상품 및 서비스의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체크리스트'에 의거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위험평가 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상품의 위험도를 등록한다.

- 신규 상품 및 서비스의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대한 검토 및 심사
 - 새로운 금융기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대한 검토 및 심사
- 위험평가점수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위험도를 분류한다.

13. 해외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고객확인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고객확인 표준이 해외지점 혹은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어야 한다.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준수하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 AML/CFT 표준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 지점 혹은 자회사에 적용되는 AML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외국/현지법이 상충되는 경우, 외국/현지법의 법률 및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둘 중의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